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4년 5 월 17 일

여 수 시 장 권오봉 인

여수시 조례 제2080호

붙임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80호

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 “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“축제 등과”를 “축제, 안전관리, 양성평등 등과”로 한다.

제5조 제2호, 제3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
3. 축제별 평가 결과 검토 및 반영

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20명 내외”를 “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추진위원장”을 “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 ④ 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

제13조 제1항,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사업계획서 심의)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1항,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축제 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)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·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축제의 위탁)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위탁의 취소 등)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(생 략)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-----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축제, 안전관리, 양성평등 등과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(생 략) 1. (생 략) 2. 축제별 사업계획 예산 심의 3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(보조사업의 사후평가)에 의한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 4.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.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 4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9월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② (생 략)	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추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. ③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 <신설>	제11조(추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---------- ③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---------- ④ 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추진위원회의 기능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<신설> ② (생 략)	제12조(추진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업계획서의 심의)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9월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 ② 예산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.	제13조(사업계획서의 심의) <삭 제> 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	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
제14조(축제사후평가 검토 및 반영) ① 추진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(보조사업의 사후평가)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·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추진위원장은 축제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제14조(축제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) <삭 제> <삭 제>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·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<신 설>	제15조(축제의 위탁)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<신 설>	제16조(위탁의 취소 등)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.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
제15조 ~ 제19조 (생 략)	제17조 ~ 제21조 (현행 제15조 ~제19조와 같음)